

#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운영요강

제 정 : 2016.10.19.

1차 개정 : 2018. 3.2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직무청렴계약제는 사장, 감사,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1급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사장 및 감사는 선임(先任)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및 본부장은 사장과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직무청렴계약은 별지 서식의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임원 및 본부장(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 3 장 직무청렴의무

**제6조(직무청렴의무)** 임원 등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채무면제 등 각종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만, 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

2.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5.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 행동강령 및 내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 제 4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제7조(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심의)** ① 임원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7조의 2(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심의)** ① 본부장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사항이 본부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제1항의 안건 관련 해당 본부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의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심의절차 및 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시 참석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가 요구된 임원 및 사건관련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가 이사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 심의한다.

⑤ 심의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재심 청구)** ①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 제 5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0조(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결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 비율은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평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금고 이상 : 경평성과급 지급액 전액
2. 자격상실 : 경평성과급 지급액 1/2 이하
3. 자격정지 : 경평성과급 지급액 1/3 이하
4. 벌 금 형 : 경평성과급 지급액 1/4 이하

**제10조의 2(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며, 징계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비율은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평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1. 금고 이상 : 경평성과급 지급액 전액
2. 자격상실 : 경평성과급 지급액 1/2 이하
3. 자격정지 : 경평성과급 지급액 1/3 이하
4. 벌 금 형 : 경평성과급 지급액 1/4 이하

**제11조(성과급의 환수)** ①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② 해당 임원 등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사는 해당 임원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후 제재)** 퇴직한 임원 등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3조(손해배상 청구)** 임원 및 본부장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6 장 보 칙

**제14조(관련부서)** 이 요강에 따른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 부 칙(제 정)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임원 및 본부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 요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관련 지침의 폐지)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지침은 폐지한다.

### 부 칙(1)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임원 직무청렴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성립)** 이 계약은 임원과 사장(또는 선임 비상임이사)이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청렴의무)** 임원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채무면제 등 각종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만, 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5.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 행동강령 및 내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6조(청렴의무 위반심의)** ① 임원이 제5조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7조(이사회 심의절차 및 방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시 참석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가 요구된 임원 및 사건관련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가 이사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 심의한다.

⑤ 심의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재심 청구)** ①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9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결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 비율은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 분 경평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금고 이상 : 경평성과급 지급액 전액
2. 자격상실 : 경평성과급 지급액 1/2 이하
3. 자격정지 : 경평성과급 지급액 1/3 이하
4. 벌금형 : 경평성과급 지급액 1/4 이하

**제10조(성과급의 환수)** ①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해당 임원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사는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퇴직 후 제재)** 퇴직한 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2조(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사는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장

(또는  
선임비상임이사) ○ ○ ○

△ △ ○ ○ ○

\_\_\_\_\_

\_\_\_\_\_

(별지 제2호 서식)

##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본부장의 직무청렴계약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성립)** 이 계약은 본부장과 사장이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부장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청렴의무)** 본부장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채무면제 등 각종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만, 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5.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 행동강령 및 내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6조(청렴의무 위반심의)** ① 본부장이 제5조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사항이 본부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제1항의 안건 관련 해당 본부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의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며, 징계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비율은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평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1. 금고 이상 : 경평성과급 지급액 전액
2. 자격상실 : 경평성과급 지급액 1/2 이하
3. 자격정지 : 경평성과급 지급액 1/3 이하
4. 벌 금 형 : 경평성과급 지급액 1/4 이하

**제8조(성과급의 환수)** ①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해당 본부장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사는 해당 본부장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퇴직 후 제재)** 퇴직한 본부장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손해배상 청구) 본부장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사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 ○ ○

본부장 ○ ○ ○

---

---